

##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제64조(압류의 해제),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등에 따라 학원법 위반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재산 압류말소(해제)를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명: 과태료 체납자 재산 압류말소(해제)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3조(과태료)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과 그 반환에 관한 사항을 표시·게시·고지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자

나. 「지방세징수법」 제63조(압류해제의 요건)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 납부, 충당, 공매의 중지, 부과의 취소, 그 밖의 사유로 압류가 필요 없게 되었을 때

다. 「지방세징수법」 제64조(압류의 해제)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그 재산의 압류통지를 한 권리자, 제3채무자 또는 제3자에게 알려야 한다.

라.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 ① 서류의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28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30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받을 사람(제30조제3항에 규정된 자를 포함한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마.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바. 「행정절차법」 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 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가. 교습비등 미계시

나. 과태료 체납

4. 공고 기간: 2025. 5. 14.(수)~5. 28.(수) 14일간

※ 공고 기간이 지나면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공시 대상

연번	이름	주소	재산 구분
1	양*선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7**, 2**동 1***호 (대화동)	부동산 (경기도 파주시 목동동 10**-*, 10**-*, 제*층 제***호, 종류:부동산, 지목: 대)

6. 유의 사항

그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900-2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2025년 5월 14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